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54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4. 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	발의일자	심사경과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한준호의원 (2209056)	2025. 3. 18.	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(25.07.01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6.03.24.) 상정
	양부남의원 (2212463)	2025. 8. 28.	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6.03.24.) 상정 *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5.11.12.)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,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·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·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,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5조)
- 나.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(안 제7조제4항).
- 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,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(안 제12조).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수급계획”을 “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”을 “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(이하 “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등 안전관리 시설”을 “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점검”을 “점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“여부도 점검하여야”를 “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,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

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,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수급계획”을 “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.

<신설>

등 안전관리 시설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시설 점검 등) ① -----

-----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,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-----.

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15조(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)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공중화장실등의 <u>수급계획</u> 수립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,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u>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15조(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수급 및 안전</u> <u>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</u>--- 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